

# 서면 지원 더뷰 드림아파트 임차인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부전동 희망더함주택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특별/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신청(청약홈)이 원칙이며, 해당 청약 신청일 홍보관에서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서면 지원 더뷰 드림아파트는 공식홈페이지 (<http://지원더뷰드림.com>)를 운영합니다.
- 공급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동반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일정 안내에 따라 홍보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서면 지원 더뷰 드림아파트 홍보관에서는 상담전화(051-441-3800)를 통해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 등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 26835호(2025.9.26.)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수리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0-1
- 임대대상 및 규모 : 공동주택(임대) 257세대 [전체 지하 4층 ~ 지상 40층, 2개동, 공동주택 352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64호실, 상가]
- 대지면적 : 2,510.40㎡
- 건축연면적 : 47,838.2787㎡ 중 공동주택 42,466.7777㎡
- 착공 및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10일 / 2028년 2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타 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계	세대당 대지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신혼부부	일반 공급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도시형 생활주택	23A	23.9987	13.7622	37.7609	19.4624	57.2233	0	18	18	2.9476
	49B	49.5286	25.5554	75.0840	40.1664	115.2504	22	110	132	6.0832
아파트	59C	59.6293	30.6906	90.3199	48.3579	138.6778	4	33	37	7.3237
	59D	59.6674	30.6957	90.3631	48.3885	138.7516	9	61	70	7.3284
합 계							35	222	257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 까지로 합니다.(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 까지로 합니다.)

### ■ 타입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세대, 천원)

주택관리번호	타입		공급 세대수	전세형 (환산보증금 100%)	보증금 비율 20%		보증금 비율 30%		보증금 비율 50%		보증금 비율 70%		보증금 비율 80%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2026850013	도시형 생활주택	23A	18	110,600	22,120	361	33,600	320	56,000	229	78,400	137	89,600	91
		49B	132	211,200	42,240	690	63,360	604	105,600	431	147,840	259	168,960	172
	아파트	59C	37	252,800	50,560	826	75,840	723	126,400	516	176,960	310	202,240	206
		59D	70	252,800	50,560	826	75,840	723	126,400	516	176,960	310	202,240	206

### ■ 전환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 각 타입별 임대보증금은 전환율 5.0%(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 부산동부지사 감정평가 시세조사일(2021년 6월 14일 전월세 전환율 지정)로 적용하여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위의 전환형별 보증금은 보증금 비율에 따른 대표금액으로 전월세 상호전환은 시행사와 협의 후 변경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받은 전환율(5.0%)은 최초 공급금액 기준이며, 변경(임차인, 임대료 등) 및 재계약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르며, 그 전환율은 4.5%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2025년 10월 현재 기준 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을 더한 비율]으로 적용합니다.

### ■ 임대보증금 납입조건

타입	납부 일정		납입 시기	납입 조건	비고
전 타입 (23A, 49B, 59C, 59D)	계약금	1차	계약 시	-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5% 납부	
		2차	계약 1개월 후	- 계약 1개월 후, 임대보증금의 5% 납부	
	잔금		입주 시	- 입주 시, 임대보증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임대보증금 납부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률(인상분)은 계약갱신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채를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 미납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 임대조건 선택안내

- 최초 계약시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을 상기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시 선택한 임대조건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신청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절차가 있더라도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주택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주택”으로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청년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비고 3)을 준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소득이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 요건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공고 진행 여부는 추후 결정됨)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택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 에서 ‘청약Home’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2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다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는 경우 퇴거요인(기존 거주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시공된 상태로 임대, 입주, 관리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가. 특별공급 대상자(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 ① 신혼부부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나.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무주택자인 청년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시모, 조부모·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우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우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이 주택은 우주택세대구성원(또는 우주택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 [2026.03.06. (금)]을 기준으로 우주택세대 구성원(일반공급 중 청년 신청자는 우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우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우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해당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임대주택의 영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우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6.0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주택”입니다.

• 본 주택은 (주)지원출딩스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주택 / 임대기간 10년)입니다.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지원출딩스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주체는 (주)지원출딩스입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6. 03. 06.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우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3.06.)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분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각 공급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 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상가 및 아파트 전체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 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은 동별·층별·항별·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 갱신 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연 5% 이내에서 인상 될 수 있음.)
- 납부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관리주체가 건물정경,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택도시기금

- 본 임대주택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써 세대당 아래 내용의 주택도시기금이 사업주체에 대출되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23A형 : 35,000,000원 / 49B형 : 96,000,000원 / 59C, 59D형 : 100,0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지원금을 받아 건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도시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에는 사업부지 및 건물 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는 사업 주체가 납부합니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청약방법
인터넷 청약 (특별 및 일반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2026년 3월 11일 (수) ~ 2026년 3월 12일 (목) /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ul>

2)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및 방법
당첨자 발표	2026년 3월 17일 (화) / 16: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li>-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ul>
계약체결	2026년 3월 23일 (월) ~ 2026년 3월 25일 (수) / 10:00~16: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99, 단지내상가 107호(부암동, 서면지원더뉴파크 단지내상가) / 임대사무실(홍보관) 방문계약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선정 및 자격요건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모집분야		세대수	자격요건	비 고
특별 공급	신혼 부부	35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li> <li>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ul>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li> <li>2 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이하</li> <li>3 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이하</li> </ul>
--	--	--------------------------------------------------------------------------------------------------------	-----------------------------------------------------------------------------------------------------------------------------------------------------------------------------------------------------------------------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시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 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각 공급 방식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신청 시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이하	4,194,699	6,452,897	8,985,272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120% 이하	4,576,036	7,039,524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100% 기준)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합니다.
-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타입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신혼부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공고 진행 여부는 추후 결정됨)
- 특별공급(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 순위에 따라 타입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선정 및 자격요건 : 청년 또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것

구 분	세대수	자격 요건
일반 공급	222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일 것</li> <li>- 신혼부부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ul> </li> </ul>

	<p>※ 사업주체의 자격검증 결과, 무주택자인 청년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불가)</li> <li>•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하여 중복당첨 시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li> <li>•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li> <li>• 임차인은 이 주택의 입주 전 및 임대차기간 중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주택소유여부 검색 필요 자료 제출 안내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 제한 또는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li> <li>•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ul>
--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당첨자는 타입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li> <li>• 본 공급의 예비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li> <li>•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미계약 주택)이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청약 신청금

구 분	청약 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 및 일반공급 전 타입 공통	100,000원 (금 일십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li> <li>※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li> <l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li> </ul>

• 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청약 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특별,일반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입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청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신청 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30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에 청약 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특별공급의 경우 신혼 및 고령자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 신청자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동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 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4.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구비서류 제출	2026년 3월 19일 (목) ~ 2026년 3월 21일 (토) / 10:00~16: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99, 단지내상가 107호 (부암동, 서면지원더뷰파크) 임대사무실(홍보관) 방문계약
당첨자 계약 체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2026년 3월 23일 (월) ~ 2026년 3월 25일 (수) / 10:00~16:00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부의 경우 당첨자의 배우자가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증명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본인	·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O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O	4.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O	5.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6.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O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8.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9.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O	10. 임신증명서류 (해당자)	· 본인 및 배우자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 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자의 명, 의료기관등록 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홍보관 비치)		
		O	1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홍보관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12. 추가 개별통지 서류	·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별	청년	O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혼인증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O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O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O	4.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 부부	혼인상태 인 경우		O	1.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O	2.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예정 인 경우		O	1. 결혼 확인서류	· 본인	· 서약서(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O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예비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O	3. 신분증 사본	· 예비배우자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O	4.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 혼인 후 구성원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O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O	2. 위임장		· 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O	3.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4. 주민등록등본 등	· 배우자	·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이 필요하며,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주의 사항	부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li> <li>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성명과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등)</li> <li>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li> </ul>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ul>		1통
외국인등록(거소) 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가 외국인에 해당되는 경우</li> </ul>		1통

•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li>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세무서</li> </ul>
	신규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li>재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ul>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ul>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li>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관리공단</li> <li>세무서</li> </ul>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li> <li>법인등기부등본 (원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ul>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li> <li>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li>해당직장</li> </ul>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li> </ul>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ul>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 각서 (홍보관 비치)</li> <li>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li> <li>※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장소</li> </ul>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1. 계약체결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99, 단지내상가 107호 / 서면 지원더뷰 드림아파트 임대사무실(홍보관) 051-441-3800
2.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비 고
우리은행	1005-004-734189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동·호수 계약자 성명 기재

- ※ 임대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성명 기재, 000동 000호 홀길동)하여야 하며, 상기 지정계좌 외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임대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감사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의 잔금 및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대지면적은 차후 분할 및 추가 편입부지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명칭 및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잔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잔금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의 최소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관리비예치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대상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 없는 경우 등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기준에 충족할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 이후 법정 기한 내 관할구청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해당 보증 가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가입 기준에 따르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6. 유의사항

###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인·허가 및 실제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옥탑, 통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모양, 입면, 환기용랩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합니다.
-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무실(홍보관)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홍보관 내 샘플세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시공하여 인도하며, 무상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대사무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설계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임대사무실(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단, 입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제 요청시 사업자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 됩니다.
-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전체를 해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Server)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호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당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 (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으로 주택을 영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주택의 임대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임대무기간(10년)경과 후 본 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 수경시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사용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되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용홀, 주민공동시설, MDF실 등으로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차인모집공고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의 높이 2.3 M / 주차구획의 높이 2.1 M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3 M
- 본 건축물의 주차대수는 자주식 292대(장애인 8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지하 4층 ~ 지하 1층, 지상 2층 ~ 지상 6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통행로 구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차량과 공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주차장 진입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설계관련 주요사항

### 1. 홍보물(카탈로그, 팸플릿)

- 각종 광고 및 홍보물(홍보관,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포된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 APT 및 주택단지,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정류장, 단지 외부도로, 공장시설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호실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 시점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 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 설계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 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모형, 각 타입 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세대

#### 1) 향, 조망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건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발코니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본 공사 시 홍보판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당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 (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 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 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는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3A타입은 호실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으로 내부 거실 천정에 천정형 무덕트 전열교환기를 설치될 예정이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9B, 59C, 59D타입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포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3. 가구 및 마감

-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바닥,벽,천정)은 별도 마감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설계도서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저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 됩니다.
- 세대내의 하향식 피난사다리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타입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면적 및 구조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기타

### 1)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외부시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녹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보호에 강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에어메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구조물 설계 변경 포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 및 사업승인(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자전거 보관소, D/A, 천창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역은 현재 미정사항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 소음유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등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 가로등, 경관조명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부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주차대수,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 예정임. 단지 내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모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기타

- 23A형의 경우 세대 내 싱크(2구 인덕션포함)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거실 에어컨 및 빌트인수납장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9B형의 경우 세대 내 시스템장(드레스룸), 싱크(가스쿱타포함), 거실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침실 벽면에 에어컨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시공되며, 침실 에어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C형, 59D형의 경우 세대 내 시스템장(드레스룸), 싱크(가스쿱타포함), 불박이장(침실2), 거실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침실1 벽면에 에어컨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 외 에어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 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 49B, 59C,D 형의 경우 기본 제공되는 에어컨 외 추가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용량문제 및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에어컨은 방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기본 제공되는 에어컨의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102동 오피스텔 23타입의 에어컨 실외기는 각 층 공용 복도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는 에어컨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계약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물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6) 외부시설물 위치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어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인근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진동, 소음,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됩니다.

7) 소음 및 주변민원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도로, 소음, 진동, 조망, 일조, 진입로, 캠핑장,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음악실,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공용부 마감

- 외벽마감은 일부에 석재로 마감 시공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의 옥상녹화의 형상 및 세부식재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속시설(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통신 감리
회 사 명	(주)팜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서광이에프	(주)골드이엔지
감리금액	1,404,843,000	553,490,687	486,200,000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임대보증금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보증금 보증내용

구 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 기 간
임대보증금보증	제02312025-704-0010000호	₩7,777,920,000	보증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 촉진 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 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전에 그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기타사항

-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집합건물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건, 조망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본 단지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건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호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학교 배정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배치 여건이 어려울 시 학군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건축관계자

구 분	상 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시 행 사	(주)지원홀딩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00, 301호 (하단동, 시티파크)	603-81-73000	051-271-1140
시 공 사	지원건설(주)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00, 3층 (하단동, 시티파크)	603-81-48234	051-271-1140
감 리 사	(주)팜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0 (서초동, 팜코사옥)	513-81-11531	02-554-2090

■ 임대문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99, 단지내상가 107호 (서면 지원더뉴 드림아파트 홍보관 (051-441-38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또는 홍보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사업현장 / 임대사무실(홍보관) 위치

**서면 지원 더뷰 드림아파트 사업현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46 (부전동 390-1)



**서면 지원 더뷰 드림아파트 홍보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99, 단지내상가(107호)

